

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김태수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현행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는 세빛섬 개장지연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(주)세빛섬에 부과한 지체상금 91억 9천2백만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20년 동안 공공성 확보 사업을 실시해야 하지만 대상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공익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.

□ 본 개정조례안은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에 공공의 안전 및 보건위생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여 사업시행자의

사업추진 어려움을 해소하고 세빛섬의 시민이용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,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